<긴급공고 사유서>

긴급공고 사유서

계약건명	광진문화예술회관 수영장 보수공사	
소요예산	금1,758,527천원(금일십칠억오천팔백오십이만칠천원) / 부가세 포함	
긴급공고 법적근거 (해당사항에 체크)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5조 참고	1.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밖에 상기 2번, 3번에 준하는 경우로서 긴급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긴급공고 사 유	본 사업은 연내 준공을 목표로 진행한 건이나 유관기관 협의 등 사정으로 사업 시행이 지연되어 신속한 시행이 필요한 공사로 긴급공고 진행하고자 함	

담당 : 직급 : 행정7급 성명 : 박민영 (서명 또는 인)

팀장 : 직급 : 행정6급 성명 : 김형만 (서명 또는 인)

부서장 : 직급 : 행정5급 성명 : 유철호 (서명 또는 인)

상기와 같이 긴급공고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